

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

선거방송 제작준칙

1. 선거방송의 목적과 시행

- 가. 회사의 선거방송은 공영방송의 사명에 따라 공명선거 실현에 이바지하고, 유권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나. 이 준칙은 대통령선거, 국회의원선거,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프로그램(이하 '선거방송'이라 한다)에 적용된다.
- 다. 선거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단위조직은 담당 국장의 책임하에 이 준칙을 실행한다. 각 단위별로 실행·감독을 위해 선거방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.
- 라. 각종 선거 관련 프로그램의 심의는 이 준칙에 준하여 시행한다.

2. 선거방송 제작의 기본 원칙

가.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보도

- 1) 선거를 앞두고 독립적인 보도·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외압을 단호히 배격한다.
- 2)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지 않으며,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다.
- 3) 후보자와 정당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, 관련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해 노력한다.
- 4) 선거와 관련된 사실과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도하며,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보도해 유권자를 혼동케 하지 않는다.
- 5) 선거방송은 지역주의를 배제한다. 지역감정, 지역 여론에 편승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비호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며, 지역별 득표 분석은 현상 적시 이외에 불필요한 해석을 삼간다.

나.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

- 1) 선거방송은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, 유권자가 제기하는

의제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에 대해 검증하며,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선거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- 2) 선거방송은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하며, 전문가와 시민들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제공한다.
- 3) 선거방송은 경마식 보도를 지양하고 공약 정책 및 후보자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 보도하여 공정한 정책 경쟁을 유도한다.
- 4) 각 당의 경선, 전당대회 등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며,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한다.

다. 후보자 및 공약 검증

- 1) 경력·학력·재산·병역·전과 등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과 자질 검증에 관한 사항은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보도한다.
- 2) 특정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. 당사자가 소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히고 보도한다.
- 3) 후보자의 가족이나 후보자 측 주요 인사에 관해 후보자와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는 보도를 할 수 있다. 다만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공직 수행의 자격을 판단한다는 검증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신중하게 보도한다.
- 4)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소개할 때는 채용 조달 방안, 이행 방법 등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함께 보도한다.
- 5) 특정 후보에 대한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를 주의하고,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한 뒤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폭로성 주장을 보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 담당 부서의 사전 자문을 구해야 하며, 폭로의 대상이 된 후보 측에 충분한 반론 기회를 제공한다.
- 6) 폭로성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거나 반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7) 특정 후보에 대한 폭로성 주장을 보도한 후, 폭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그 내용을 보도한다.

라. 여론조사

- 1) 선거를 앞둔 시기의 여론조사는 법적 금지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초에 실시해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. 또, 경선 중이거나 급격한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경우 1주 또

는 2주 단위로 조사한다.

- 2)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이므로, 국민 전체의 의견으로 과장하여 보도하지 않는다.
- 3) 여론조사 질문 내용은 후보의 지지도 이외에 가상대결, 정책 이슈별 반응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로 할 수 있다.
- 4) 여론조사 결과를 전할 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반드시 밝혀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
- 5)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조사방법을 사용하거나,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유사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.
- 6)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‘경합’으로 표현한다.
- 7) 타 언론사 및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할 때도 이상의 원칙을 적용한다.

마. 공명선거 및 유권자 참여 유도

- 1) 유권자를 위한 온라인 정보 제공
 - 가)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, TV뿐 아니라 SNS, 웹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한다.
 - 나) 공명선거 및 유권자의 선거 참여 고취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.
- 2) 건전한 선거운동의 장려
 - 가) 금권 선거나 관권 선거, 불법·타락 선거 운동은 철저히 감시해 적극적으로 보도한다.
 - 나)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에는,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.
 - 다) 선거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은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수시로 쉽게 풀어 설명한다.
 - 라) 시민단체의 건전하고 적법한 공명선거 독려 활동을 적극 소개한다.
 - 마) 정치적 냉소나 불신을 조장하는 보도는 지양한다.

3. 선거 보도

가. 취재 · 보도의 정치적 독립성

- 1) 특정 정당, 후보자, 지지세력, 단체 및 개인의 압력에 의해 보도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.
- 2) 개인적 정치향, 이해관계, 지연, 학연 및 친소관계 등에 따른 편향성을 배격한다.

- 3) 취재기자와 해당 분야의 데스크 담당자, 부서장 및 보도 책임자(국장) 등 기사 작성과 편집, 제작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 외에 누구도 취재 내용이나 방송 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.
- 4) 선거 취재와 관련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,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편의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.
- 5) 비보도(오프 더 레코드), 보도유예 요청(엠바고)은 존중하되 가급적 해제되도록 설득한다. 엠바고 승낙과 파기 등의 자세한 사항은 '시사·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'의 '비보도·보도유예' 항목을 따른다.

나. 취재·편집의 자율성

- 1) 선거보도 기사의 비중은 해당 부서장이 취재기자와 협의하여 판단하며,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편집회의는 이 판단을 존중한다.
- 2) 보도 책임자(국장)는 부서장의 정당한 판단을 저해하는 사내·외 압력에 적극 대처하고 불공정 보도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.
- 3) 선거보도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, 그 경우 격월로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다. 선거보도 순서

- 1)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 기간 전에는 여당, 제1야당, 제2야당, 군소정당, 무소속의 순서를 유지하며, 후보 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후보에게 부여된 기호 순서를 따른다.
- 2) 선거 관련 일반 보도에서는 여야의 순서보다 기사의 비중이 우선하며, 이 때 기사의 비중은 해당 보도 관련 부서가 판단하고,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편집회의는 이 판단을 존중한다.
- 3) 기사 비중의 판단은 언론의 양식과 보편적 상식을 바탕으로 한다.

라. 시간배분

- 1) 여야 후보와 관련한 보도 기사의 개수와 시간은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공평하게 기사 개수와 시간을 배정하도록 노력한다.
- 3) 뉴스 리포트뿐 아니라 취재기자가 출연하여 보도할 때도, 각 후보자에 대해 최대한 균등한 시간을 배분하도록 노력한다.
- 4) 개별 보도의 기사 길이는 내용과 비중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한다.

마. 영상취재, 화면 편집

- 1) 영상취재 기자와 영상편집 담당자는 선거 관련 현장 보도가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한다.
- 2) 영상취재 기자와 영상편집 담당자는 객관적인 화면 구성을 위해 취재 기자와 긴밀히 협의한다.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화면 사용에는 신중해야 한다.
- 3) 후보자들의 유세 및 연설 화면은 최대한 동일한 각도와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삽입 화면과 현장음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편집한다.
- 4) 맥락과 무관하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화면과 음향은 방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바. 일반 뉴스

- 1) 정치와 무관해 보이는 일반 뉴스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, 선거를 앞둔 기간에는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.
- 2)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가 공개적으로 발표·지시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보도할 때는,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선심성 의도가 아닐지 경계해야 한다.
- 3) 외신이 바라보는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유·불리 전망 보도를 인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.
- 4) 특정 정당 및 후보와 특정 언론사의 논쟁은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, 사실로 확인된 사안에 한해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.

4. 토론 방송

가. 토론 방송의 목표

- 1) 유권자의 바른 판단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.
- 2) 정책대결을 유도해 선거문화의 발전을 꾀한다.
- 3) 공정성과 형평성,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킨다.

나. 토론 방송의 편성과 일반원칙

- 1) 선거 토론 방송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.
- 2)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 방송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후보자 개별 토론 방송은 가급적 동일 시간대에, 동일한 방송 분량으로 편성하며,

예고 방송과 후보자 관련 사전 제작물(리포트 또는 영상 구성물 등) 역시 동일한 시간 분량과 포맷으로 처리한다.

- 4) 후보자의 분장은 회사에서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나, 후보 측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.
- 5) 후보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토론의 구체성을 높이고 문제 제기와 해명을 검증할 수 있는 보조 자료(출판물, 그래프 등)를 활용할 수 있다.
- 6) 특정 후보와 긴밀하게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한 토론은 방송하지 않는다.
- 7) 선거 토론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분야별 외부 전문가 7명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8) 선거 토론 방송 제작진은 후보자들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고,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바로잡고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.

다. 자문위원회

- 1) 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, 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며,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후보자 토론 방송이 되도록 자문한다.
- 2) 자문위원회는 후보자 토론 방송이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되도록 정책 위주의 주제를 선정한다.
- 3) 자문위원회는 패널과 각종 단체, 학계 등에서 제시한 질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문한다.
- 4) 자문위원회는 토론방송이 끝난 뒤 철저한 분석 평가로 다음에 있을 토론방송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한다.

라. 토론자 선정

- 1) 선거 토론 및 정책 토론에 참여할 후보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.
 - 가) 국회의원 5인 이상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
 - 나) 또는 중앙 일간지와 지상파 중앙방송사 등 3개 이상의 중앙 언론사가 조사해 보도한 여론조사(토론 개최일 이전 30일간) 결과, 평균 지지율이 5% 이상인 후보자. 단 지방의회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 언론 포함.
 - 다) 또는 중앙 일간지와 지상파 중앙방송사 등 3개 이상의 중앙 언론사가 조사해 보도한 여론조사(토론 개최일 이전 30일간) 결과, 정당 지지율이 평균 10%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
- 2) 위 1)항의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 중 국민의 알권리와 효율적 토론을 위해 후보 2

명만을 초청해 후보 간 1:1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.

- 3) 위 1)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 및 뉴스 가치 판단에 의거해 별도의 토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마. 패널과 질문

- 1) 토론 패널은 특정 정당 및 후보와 무관한 전문가 군 안에서 토론 주제에 맞게 선정한다.
- 2) 개별토론의 토론방송에 응하는 후보자가 많으면 후보자 추첨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패널을 운용한다.
- 3) 깊이 있는 정책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유권자들의 후보 자질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. 토론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질문은 배제한다.
- 4) 방송 하루 전까지 후보자 진영 실무 책임자에게 토론 주제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통보한다.

바. 토론 방송 형식

- 1) 후보자가 토론 방송에 출연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출연에 응한 후보자들만으로 토론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.
- 2) 각 당의 후보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와 주요 정당의 확정 등록 후보 개별 초청토론처럼 토론자가 한 명일 경우 토론 방송은 사회자 1명과 주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청문회 식으로 진행한다.
- 3) 후보자간 1대1 토론이나 다자간 토론일 경우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.
- 4) 후보자간 1대1 토론이나 다자간 토론은 사회자 1명이 진행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자유로운 발언기회를 주되 발언시간은 공평하게 배분한다.
- 5) 후보자가 답변과 질문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시간 확인 장치(팻말, 디지털시계, 소리 신호 등으로 30초 전, 20초 전, 10초 전, 시간초과 표시)를 운용한다.
- 6) 토론의 사회자는 특정 정당 및 후보와 관계없는 중립적 인사 가운데 선정한다.

5. 개표방송

가. 정확도 우선의 원칙

- 1) 개표방송은 신속보다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.

- 2) 예측 결과를 발표할 때는 조사기관, 의뢰기관, 조사대상을 명시하고 예측에 대한 신뢰수준과 오차 범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.
- 3) 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.
- 4) 개표 결과 예측이 크게 빗나갔을 경우, 개표방송 말미에 시청자에게 혼동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.
- 5) 총선 및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 많을 경우 정당별 의석수를 예단해서 발표하지 않는다.

나. 개표방송의 진행자

- 1) 개표방송의 진행자는 정치적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객관성과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.
- 2) 개표방송의 진행자는 개인적 감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진행하거나, 편견을 담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3) 개표방송의 진행자는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며, 선거의 본령을 호도하는 표현(전투용어, 스포츠 용어, 비어,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비유한 은어, 정치적 선동 구호 등)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4) 개표 관련 용어(우세, 경합, 혼전, 확실 등)는 명확하게 정의해서 사용하며 가급적 당선 확률의 개념을 도입해 정의하도록 한다. 개표방송의 진행자는 시청자들이 이같은 개념을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6. 시사 및 일반 방송

가. 후보자 출연금지

- 1) 보도와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(입후보 예정자 포함)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,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담아서 안 된다.
- 2) 위 기간 중 후보자의 저작물, 후보자가 출연한 음반·영상물, 후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, 후보자가 속한 단체의 활동 등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담아서 안 된다.
- 3) 위 기간 중 후보자가 출연하거나, 후보자의 성명, 사진,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해 제작된 광고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.
- 4) 위 기간 중 후보자의 친인척이나 지인,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,

선거운동원 등을 출연시켜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 등을 방송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.

나. 제작 준칙

- 1) 위 기간 중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거나 그 후보자를 연상할 수 있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후보자가 그가 속한 정당에 유리,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.
- 2) 위 기간 중 선거 부정, 혼탁 등 문제점을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, 해당 지역이나 당사자의 행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이나 인물의 실명화가 선거운동에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- 3) 위 기간 중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집중 부각 또는 의도적 배제,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소재와 표현을 삼간다.
- 4) 위 기간 중 후보자, 정당, 후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, 후보자가 속한 단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.
- 5) 선거의 과열이나 혼탁상을 고발, 풍자하는 경우에도 유권자에게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줘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.

다. 프로그램 진행자

- 1)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정치적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객관성,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.
- 2)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개인적 감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진행하거나, 편견을 담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3)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선거의 본령을 호도하는 표현(전투용어, 스포츠 용어, 비어,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비유한 은어, 정치적 선동 구호 등)을 사용하지 않는다.

라. 이 밖의 사안들은 '시사·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'을 준용한다.

7. 부칙

가. 이 준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관례적 기준에 따른다.

나. 위 준칙 운영과 관련해 제작진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,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.